

■ 치과 칼럼

치아의 손실

오늘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치아의 손실과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 손실의 주 원인으로는 충치, 치주염 또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치아 하나를 잃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방치하면, 이는 입안의 체인 리액션 즉,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시작이 됩니다.

치아 한 개의 손실로 인해 먹는 방법이나 말투, 그리고 얼굴 형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후치의 손실은 음식의 저작 능력의 저하와 적절한 클리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치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아는 수많은 얇은 ligaments (인대)에 의해 잇몸뼈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의 저작운동으로 잇몸뼈를 자극하여 뼈의 형상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아의 손실은 전체적인 얼굴 형태까지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치아 손실 후 첫째 안에 잇몸뼈의 폭이 25%가 얇아지고, 잇몸뼈 손실은 계속 되어 많게는 4mm 이상 얇고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잇몸뼈의 변화로 인해 전체적인 안면뼈의 구조가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얼굴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전체 얼굴 형태를 변형시키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facial angles (안면윤곽)의 변화입니다. 아랫니의 손실은 턱뼈의 높이를 낮아지게 만들어 얼굴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특히 얼굴 길이가 선천적으로 짧은 분들은 저작력이 세기 때문에 이는 더 빠르고 많



은 양의 잇몸뼈의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입술 주변의 주름을 야기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bite relationship (교합관계)의 변화입니다. 낮아지는 잇몸뼈, 턱뼈로 인해 교합이 무너져서 양 입술 끝이 처지게 되어 항상 얼굴이 찌푸려져 보이는 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입술 형태의 변화도 생기게 되는데, 입술을 받쳐주는 치아의 손실로 그 두께가 얇아지고, 입술 주위의 근육의 톤이 줄어들고 이는 주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턱뼈의 손실로 이에 연결돼 있는 근육에 영향을 주어 턱근육이 늘어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뼈 손실의 결과는 우리의 외모를 많게는 10년이나 노화되어 보이게 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방치된 문제의 치아 하나로 인해 남아있는 건강한 치아들을 잃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얼굴 형태까지 변형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리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최근 취업이민의 경향에 대하여

이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취업이민 신청자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심사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취업이민 관련 법규정을 잘 준수하고 이슈가 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만 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취업영주권이기에 때문에 이민에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가장 많이 취업이민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취업이민의 경향을 짚어 보고 이에 맞춘 영주권 신청인들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정임금 수준의 상황

최근 눈에 띄는 경향은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적정임금결정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시에 미국 노동청이 임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정임금이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고 그 회사에서 고용이 시작될 때 회사가 꼭 주어야 하는 수준의 임금입니다. 이 적정임금은 미국 회사들이 이민자들을 쓸 영주권을 매개로 쓸 임금을 고용하는 것과 미국내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학사학위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4단계까지 있는 적정임금 수준 구간에서 Level 1-2 수준 결정이 되어 임금이 크게 높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Level 3 정도에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 적정임금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런 경향은 숙련직 (Skilled Worker)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숙련공의 적정임금도 함께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는 취업청원서 (I-140: 고용주의 초청장) 접수 시에 법인세금보고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고용주가 증명해야 하는 재정 능력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 전에 고용주의 적정임금지불 능력 (Ability to pay proffered wage) 이 충분한지 세금보고서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 취업이민 신청인의 학위 수여 학교의 인가 문제와 학위의 적절성

최근 또 눈에 띄는 경향 중에 하나가 취업이민 신청인의 학위 수여 기관에 대한 면밀한 조사입니다. 미국 대학교 이상의 학력기관은 미국 교육부 (US Dept of Education)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인증 (accreditation)을 받

음으로써 합법적 학위수여기관인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학력인증기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학교의 학위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이민의 경우 유효한 학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사 3순위나 석사 2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시고 졸업하신 학교가 규모가 작은 학교인 경우는 반드시 학교의 인증 (Accreditation)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이 학위와 관련하여 문제를 삼는 경우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입니다. 학사 학위의 경우에 미국 정규학교처럼 4년제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3년 만에 학위를 수여 받는 학교는 이민국이 미국의 4년제 대학 학사학위와 동등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학력인증기관을 통하여 학력을 인증 받되 정확하게 미국의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와 동등 (equivalent)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된 인증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3. 신분유지증명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인터뷰 시까지 신분유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전수인터뷰

잘 알려진 대로 취업영주권의 경우 모든 신청인이 인터뷰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른 영주권 인터뷰와 달리 광범위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 대한 질문들, 영주권 신청인 본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들, 앞으로 일하게 될 회사에서의 고용 조건에 대한 질문들, 신청의 신분유지에 관한 질문 등 광범위한 내용이 이 인터뷰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를 준비하고 또 인터뷰 시에 변호사와 동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